



환경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」(환경부고시 제2020-263호) 제정·시행에 따라 '21.1.1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었으나, 3개월('21.1.1~3.31) 동안은 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재포장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계도한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, 계도기간이 종료된 '21.4.1일부터는 '21.1.1일 이후 제조·수입한 제품의 재포장 금지 위반사례는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3. 아울러, 위 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① 재포장 중 단위제품·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② 중소기업에서 생산과정 중 재포장되어 제조된 제품은 '21.7.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각 시·도에서는 관할 시·군·구에,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에 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.
2.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1부. 끝.

환 경 부 장 관

수신자 서울특별시(자원순환과장), 부산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대구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인천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광주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대전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울산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경기도지사(자원순환과장), 강원도지사(환경과장), 충청북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충청남도지사(기후환경정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환경보전과장),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(물환경과장), 경상북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경상남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환경정책과장), 관련업계, 한국환경공단이사장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

파견직 **권유진** 환경사무관 **홍성철** 과장 전결 2021.6.21. **김고응**

협조자

시행 자원순환정책과-227 접수

우 30103 환경부 환경부 / <http://me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7348 팩스번호 044-201-7351 / rossete@me.go.kr / 대국민 공개